


의정활동보고서



제252회 임시회(2012. 2. 8 ~ 2. 1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임진년 새해 첫 번째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 개회를 통하여 3백만 도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비회기 중에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 시설 위문이 있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도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도의회는 내실 있는 지방의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풀뿌리 연구회 등 다양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수립하는 의회상을 정립하였고, 서민경제 등 주요 도정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재해현장과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전 의원들이 합심 단결된 모습으로 전국 최우수 모범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럽발 재정위기와 함께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역의 근본산업인 농·축산은 FTA, 소값 폭락, 구제역으로 인하여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서민들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명품교육, 복지경북, 양극화 해소 등 크고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백만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한다면 하늘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금번회기에는 2012년도 집행부 업무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건만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 3백만 도민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8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7
II. 의사일정		9
III. 의안처리		15
IV. 민원처리		16
V. 본회의 보고사항		18
VI. 5분 자유발언		34
□ 이시하 의원(문화환경위원회/문경)		34
□ 김말분 의원(문화환경위원회/비례)		37
□ 박태환 의원(교육위원회/교육5)		41
□ 김창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비례)		45
□ 배수향 의원(문화환경위원회/김천)		49

부 록

□ 조례안(11건)	53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52회 임시회는 2012년 2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17일까지 10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4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2월 8일(화) 오후 2시에 개의하였고, 이시하 의원의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마련촉구'와 김말분 의원의 '나라 사랑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52회 경상북도임사회 회기 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였다.

2월 17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태환 의원, 김창숙 의원, 배수향 의원이 '잘못된 언어정책 관련', '일본 기슈 광산 한국인 사망자 추모', '대명마트 규제문제' 등 각각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11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기타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

이 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성주일반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중장기적인 경북경제와 서민경제의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경북교촌한옥마을 월정교 복원공사 현장과, 친환경 제철소(포스코) 견학, 구룡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현장을 방문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칠곡소방서, 상주소방서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등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2년 2월 8일(수)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2년 2월 8일 ~ 2월 17일(10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38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4	1	2	2	2	1	2	1		3
누 계	228	18	30	30	24	21	29	23	29	24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8(수) 14:00 (제1차)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 문화환경위원회 이시하 의원(문경) ○ 문화환경위원회 김말분 의원(비례) ☐ 안전처리 ○ 제2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2.17(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교육위원회 박태환 의원(교육) ○ 문화환경위원회 김창숙 의원(비례) ○ 문화환경위원회 배수향 의원(김천)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2.17(금) 11:00 (제2차)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9(목) 14:00 (제1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회사무처 ☐ 안전심사 ○ 제253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9(목) 11:00 (제1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 안전심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10(금) 11:00 (제2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본부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5(수) ~ 2. 16(목)	☐ 현지방문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성주일반산업단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3(월) 11:00 (제1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감사관, 보건복지여성국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4(화) 11:00 (제2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행정지원국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9(목) 11:00 (제1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 안전심사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10(금) 11:00 (제2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환경특별관리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6(목)	☐ 현지방문 ○ 경주 교촌한옥마을 월정교 복원공사 현장 ○ 친환경 제철소(포스코) 견학 ○ 구룡포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현장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3(월) 10:30 (제1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9(목) 11:00 (제1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낙동강살리기사업단, 건설도시방재국	
2. 10(금) 11:00 (제2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청이전추진본부, 소방본부	
2. 14(화)	☐ 현지방문 ○ 칠곡소방서, 상주소방서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14(화) 10:30 (제1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교육청 ☐ 안전심사 ○ 경북도립대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8(수) 10:35 (제5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2012년도 독도수호 업무보고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8(수) 10:00 (제5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2012년도 낙동강살리기 업무보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사 안 건	비 고
2. 8(수) 11:00 (제6차)	☐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 2012년도 도청이전 업무보고	

Ⅲ. 의안처리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3 (216)	13 (212)	10 (170)	3 (40)	(2)		(2)	(2)	
조 례 안	소 계	11 (116)	11 (112)	8 (84)	3 (26)	(2)		(2)	(2)	
	의 회 제 안	(32)	(30)	(24)	(6)			(1)	(1)	
	도지사 제 출	7 (64)	7 (62)	5 (45)	2 (16)	(1)		(1)	(1)	
	교육감 제 출	4 (20)	4 (20)	3 (15)	1 (4)	(1)				
규 칙 안		(2)	(2)	(2)						
예산 · 결산		(13)	(13)	(4)	(9)					
동의 · 승인		(22)	(22)	(19)	(3)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21)	(21)	(19)	(2)					
기 타 안		2 (39)	2 (39)	2 (39)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2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7 (49)	(8)	3 (8)	(7)	4 (16)	()	(3)	(3)	(1)	(3)
의 회 운 영										
기 경 회 제										
행 정 보건복지	3		3							
문 화 환 경										
농수산										
건 설 소 방	3				3					
교 육										
특 별 위원회										
타기관	1				1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7 (49)	6 (44)	()	()	1 (5)	()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3	3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4	3			1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조례안 11, 기타 2)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경상북도지사 (‘12. 1. 27)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12. 1. 30)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12. 1. 30)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 (‘12. 1. 30)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12. 1. 2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 (‘12. 1. 30)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12. 2. 8)	제2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의장 (‘12. 2. 8)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2. 조례공포 사항 : 16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1.12. 8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12.26 (제3289호)
"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1.12.26 (제3290호)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291호)
"	"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 (제3292호)
"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293호)
"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94호)
"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295호)
"	"	경상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296호)
2011.12.16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 1. 2 (제3297호)
"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주택조례	2012. 1. 5 (제3298호)
"	"	경상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3299호)
"	"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300호)
"	"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01호)
"	"	경상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302)호
"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03호)
"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04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의회운영위원회	1. 6	운영위원장실	○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 • 입법정책관실 재배치의 건 - 자치연구실을 의회본관 3층으로 재배치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1. 6	제2별관별장실	○ 4개 시·도의회 신공항 재추진 동향에 따른 간담회 개최 • 총선 및 대선 공약 채택 노력 • 4개 시도의회와 공조 등
서민경제특별위원회	1. 12	영공설시장	○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 전통시장활성화 캠페인 전개 • 현장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강구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천년왕국 신라의 재조명」 학술대회 참석
 - 일 시 : 2011. 12. 19(월) 10:3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박병훈, 최학철 의원
- 한국교통 장애인 교육 참석
 - 일 시 : 2011. 12. 19(월) 11:00
 - 장 소 : 청솔밭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경북교통연수원 신규 채용자 교육 참석
 - 일 시 : 2011. 12. 20(화) 09:00
 - 장 소 : 포항 연일복지회관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국제 양·한방 의료관광 힐링센터 착공식 참석
 - 일 시 : 2011. 12. 20(화) 15:00
 - 장 소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강당
 - 참 석 : 박병훈, 최학철 의원
- 경북 FTA 활용 지원 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1. 12. 20(화) 11:30
 - 장 소 : 구미 상공회의소
 - 참 석 : 변우정 의원
- 제3기 경북주부모니터 하반기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1. 12. 21(수) 10:00
 - 장 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박성만 의원
- 산림소득증대 비전제시 및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1. 12. 22(목) 14: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고우현 위원장, 김기홍, 김창숙 의원
- TBC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참석
 - 일 시 : 2011. 12. 22(목) 16:05
 - 장 소 : TBC 대구방송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KBS 대구방송 성금모금 참석
 - 일 시 : 2011. 12. 23(금) 14:30

- 장 소 : KBS대구방송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연합뉴스 인터뷰
 - 일 시 : 2011. 12. 23(금) 14: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 도의회 출입기자단 송년오찬 참석
 - 일 시 : 2011. 12. 26(월) 12:00
 - 장 소 : 대구 부용식당
 - 참 석 : 이상효 의장
-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장 공모제 심사
 - 일 시 : 2011. 12. 27(화)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 참 석 : 김원석 의원
- 도내 사립 초·중·고 특수학교 인사담당자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1. 12. 27(화)
 - 장 소 : 금오산호텔
 - 참 석 : 박태환 의원
- 제6회 한·중·일 청소년교육 관광포럼 참석
 - 일 시 : 2011. 12. 28(수) 18:30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참 석 : 박병훈 의원

- 대구·경북 지역발전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1. 12. 28(수) 18:30
 - 장 소 : 대구 자금성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1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행사
 - 일 시 : 2011. 12. 31(토) 24:00
 - 장 소 : 영덕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윤창욱 위원장, 김기홍, 박진현 의원
- 2012년 해맞이 행사
 - 일 시 : 2012. 1. 1(일) 06:00
 - 장 소 : 영덕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김기홍, 박진현 의원
- 2012년 신년 현충탑 참배
 - 일 시 : 2012. 1. 2(월) 07:30
 - 장 소 : 영천호국원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수용, 한혜련 의원
- 안동소방서 故 박진호 대원 영결식 참석
 - 일 시 : 2012. 1. 2(월) 09:00
 - 장 소 : 안동소방서 앞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김명호, 이영식 의원
- 2012년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 일 시 : 2012. 1. 2(월) 12: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쏠 도의원
- 대구 상공회의소 신년기관장 오찬 참석
 - 일 시 : 2012. 1. 2(월) 12:4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경상북도 평준화지역 고입 무시험 관리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1. 5 ~ 1. 9
 - 장 소 :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2. 1. 5(목) 18:30
 - 장 소 : 서울 프레스센터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삼락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2. 1. 6(금)
 - 장 소 : 그랜드호텔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 자연보호 경북협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1. 9(월) 11:00
 -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박병훈 의원

- 투자기업 “A”사 MOU 체결 참석
 - 일 시 : 2012. 1. 9(월) 15:00
 - 장 소 : 제1회의실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 2012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12. 1. 9 ~ 1. 20
 - 장 소 : 시·군 사회복지시설(422개 시설)
 - 참 석 : 쏜 도의원
- 2012학년도 경북교육 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2. 1. 10(화)
 - 장 소 : 경북교육연수원
 - 참 석 : 박태환 의원
- 2012년 문경교육지원청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1. 10(화)
 - 장 소 : 문경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경상북도 여성 신년 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2. 1. 10(화) 11:00
 - 장 소 : 구미 금오산 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윤창욱 위원장, 구자근, 김말분,
변우정, 채옥주 의원

- 2012년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2. 1. 11(수) 11:00
 - 장 소 : 대구 제이스호텔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사)담수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2. 1. 11(수) 11:00
 - 장 소 : 담수회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뮤지컬『강치대왕 쿠키상자』독도 홍보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1. 12(목)
 - 장 소 : 서울 강동아트센터
 - 참 석 : 전찬걸, 이경임 의원
- MBC 대구 시사광장 출연
 - 일 시 : 2012. 1. 12(목) 10:00
 - 장 소 : MBC대구방송국
 - 참 석 : 이상호 의장
- 전력기술인협회 경북지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1. 12(목) 11:00
 - 장 소 : 청솔밭
 - 참 석 : 김희수 의원
- 경북지구 JC 특우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1. 12(목) 16:00

- 장 소 : 포항 UA 컨벤션 6층 다이너스티 홀
- 참 석 : 이상효 의장, 한창화 의원
- 경상북도 청년유도회 회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1. 14(토) 17:00
 - 장 소 : 안동실내체육관 만남의 광장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의원
- 경북 교총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1. 16(월)
 - 장 소 : 경산컨벤션 웨딩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 2012년 예천교육지원청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1. 17(화)
 - 장 소 : 예천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2012년 경상북도 새마을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2. 1. 18(수) 11:00
 - 장 소 : 경상북도새마을회관
 - 참 석 : 이상효 의장, 송필각 부의장, 윤창욱 위원장,
이시하, 변우정 의원
-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현장체험 참석
 - 일 시 : 2012. 1. 18(수) 14:00

- 장 소 : 안동 구시장
- 참 석 : 이영식 의원
- 2012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1. 18(수)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배수향 의원
- 낙동강살리기운동본부 신년간담회
 - 일 시 : 2012. 1. 18(수) 15:00
 - 장 소 : 자연환경연수원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화랑설화마을 착수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1. 19(목)
 - 장 소 : 영천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김수용, 한혜련 의원
- 의회사무처 직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일 시 : 2012. 1. 19(목) 11:00
 - 장 소 : 경주 안강시장
 - 참 석 : 이상효 의장, 이 달, 박병훈, 최우섭, 최학철 의원
- 예천 119 안전센터 청사 착공식 참석
 - 일 시 : 2012. 1. 19(목) 11:00
 - 장 소 : 예천 119안전센터
 - 참 석 : 도기욱, 정상진 의원

- 2016년 전국체전실사단 환영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1. 19(목) 12:00
 - 장 소 : 포항 죽도시장
 - 참 석 : 이정호 의원
- 자매결연기관(해군 제1함대 사령부) 위문
 - 일 시 : 2012. 1. 19(목) 15:30
 - 장 소 : 강원도 동해시
 - 참 석 : 이상효 의장, 전찬걸 의원
- 2012년 울진교육지원청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1. 20(금)
 - 장 소 : 울진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2012년 안동교육지원청 실적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1. 26(목)
 - 장 소 : 안동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여성공무원 파워업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1. 26(목)
 - 장 소 : 코오롱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이 달, 채옥주 의원
- 2012년 제1회 건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1. 26(목)

- 장 소 : 제1회의실
- 참 석 : 김수용, 윤성규 의원
- 제12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
 - 일 시 : 2012. 1. 27 ~ 1. 28
 - 장 소 : 울산광역시청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행정부지사 초청 위험도로 현장점검
 - 일 시 : 2012. 1. 29(일)
 - 장 소 : 녹전면 위험도로 구간
 - 참 석 : 김명호 의원
- 2012년 경북 유림문화단체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2. 1. 29(일)
 - 장 소 : 안동체육관 연회장
 - 참 석 : 김명호, 이영식 의원
-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1. 30(월)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하수 의원
- 전국시도 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 참석
 - 일 시 : 2012. 1. 30(월) 15:00
 - 장 소 : 대전광역시 의회
 - 참 석 : 이상효 의장

- 2012년도 경상북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1. 31(화) 14:00
 - 장 소 : 경북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도기욱, 박진현 의원
- 경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2. 1(수) 11:00
 - 장 소 : 필로스호텔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제8회 서라벌 한·중 청소년문화교류 캠프 참석
 - 일 시 : 2012. 2. 1(수) 14:00
 - 장 소 : 영천시민회관
 - 참 석 : 한혜련 의원
- 청도-한국씨름협회 업무 협약식 참석
 - 일 시 : 2012. 2. 2(목) 11:00
 - 장 소 : 청도군청 제1회의실
 - 참 석 : 박권현 의원
- 경북 자연사랑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2. 2(목) 15:30
 - 장 소 : 구미환경연수원
 - 참 석 : 변우정 의원
- 경북옥외광고협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2. 3(금) 11:00

- 장 소 : 아모르 웨딩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움 참석
 - 일 시 : 2012. 2. 3(금) 17:50
 - 장 소 : 포스코 국제관
 - 참 석 : 장세현 위원장
-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 세부추진계획 주민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2. 2. 3(금) 14:00
 - 장 소 : 경산시립도서관 시청각실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세호, 김영식, 서정숙, 윤성규 의원
- 경북산악연맹정기총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2. 2. 3(금) 18:30
 - 장 소 : 필로스호텔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경상북도 청년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2. 4(토) 17:00
 - 장 소 : 영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호 의장
- 경상북도 수용관련 업무 개선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2. 6(월)
 - 장 소 : 청송 주왕산호텔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 청도교육지원청 개청식 참석
 - 일 시 : 2012. 2. 7(화)
 - 장 소 : 청도교육지원청
 - 참 석 : 서정숙 의원
-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2. 7(화) 11:00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제1회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2. 7(화) 14:00
 - 장 소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참 석 : 김명호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2년 2월 8일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시하 의원(문경) ◎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마련촉구>>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문경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61년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지방자치시대를 전개하여 왔으며 2012년
지금 어느새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지방자치는 출발당시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관치행정,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져있던 지방행정의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나도록 하고 지방
분권적 자치행정과 지역민을 위한 위민(爲民) 행정체제로 이행
하는 지각변동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그 권한이 매우 미약하였음에도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지방분권적 주민자치제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자치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권리신장과 주민 의견수렴 및 복지증진에 앞장서는 등 그야말로 민의에 기초한 참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대 의원님들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존경의 뜻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 놓은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경제, 사회, 교육의 발전수준에 비교하여 볼 때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위기라 부를 만큼 제도적 기반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30년 만에 어렵게 꽃피운 지방자치가 열매도 맺기 전에 고사하는 불행한 일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생활정치가 실현되어야 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시 당시만 하더라도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 증진과 정당발전의 토대가 되어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번 지방

선거를 치루면서 정당공천제는 지역주의 정당의 고착화, 공천 과정에서의 비리 등을 문제점으로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폐해로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의 자율적 운영 체제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거대이념의 각축장도 아니며 직업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곳도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주체가 되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생활 정치가 펼쳐지는 곳으로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절실한 생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통과 화합의 정치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앙주도의 샤워정치가 아닌 지역으로부터 솟구쳐 올라가는 분수형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제도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민과 함께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살아갈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정치리더십은 지역주민과 사회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봉사와 사랑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경북도는 물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이의 실현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말분 의원(비례) ◎

<<나라사랑 교육의 필요성>>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말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이 나라의 존재와 의미를 공고히 하고 나라사랑 의식을 고취하는 노력을 우리 도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세기 망국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 역사에서, 나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압축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목숨을 초개처럼 던져 나라를 지켜낸 고귀한 애국정신 덕분이며,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든 것도, 그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1인당 GNP가 80달러에 불과했던 당시 독일에 차관을 빌리는 대가로 건너갔던 파독 광부들이 7천여 명, 간호사가 1만여 명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파독광부들이 지하 1,000M에서 석탄에 절은 새까만 얼굴로 건져 올린 우리 조국의 근대화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피 묻은 돈과 한일 기본조약에서 얻은 차관으로 만든 경부고속

도로, 앞만 보고 거친 숨 몰아쉬며 긍정의 힘과 양의 기운으로 일구어낸 산업화·민주화·세계화의 역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과 북, 이념간의 대립, 여야 간의 갈등, 계층과 세대 간의 간격 등 현실은 참담하리만큼 심각한 대립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안보의식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 중 성인 36.3%, 청소년 58.7%가 「6·25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다」는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못했고, 「6·25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 청소년 36.3%, 성인 21.4%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결과를 볼 때, 우리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의 역사인식과 안보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시카고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조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조사대상 34개국 중 한국은 31위로 나타났으며, 2011년 조선일보가 시행했던 세계 10개국 ‘행복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다른 나라 국적을 주고 싶어서 국외 출산을 생각해봤다는 암울한 결과를 볼 때, 본 의원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도차원에서는 단순히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관련 행사나 보훈가족 지원제도 등을 제외하고는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나 체계적인 교육은 너무나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요즈음 위기청소년의 증가, 학교폭력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인성교육과 나라사랑 교육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학교에서는 성적이나 학벌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면서 나라사랑과 역사의식, 애향심 등의 정신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와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땅의 어린 청소년들이 깨어있는 의식과 나라를 위한 애국 정신을 갖고 있어야 선진 일류국가에 보다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우리 젊은 세대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위해 정부와 경북도 및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 서로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육주체간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교환함으로써 나라 사랑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이를 통한 나라사랑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나라사랑의 정신을 올곧게 일깨우고, 나라사랑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 우리 기성세대들 역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도 차원에서 제대로 짚어주고, 온 국민과 우리 경북도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옹도 '경북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우리 경북도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애국혼을 면면히 이어받고
우리 도민들 모두 나라사랑의 마음을 반석처럼 다져 '더 큰 대한
민국', '더 큰 경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적
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년 2월 1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박태환 의원(구미, 군위, 의성) ◎

<<잘못된 언어(모국어와 외국어) 정책과 교육에 대하여>>

구미·군위·의성 출신 교육의원 박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는 물론 우리 경상북도의 잘못된 언어
정책과 교육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피해와 걱정스런 실태를 살펴
보고 그 개선점을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초고속 경제성장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교육의
힘이라 자타가 공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온 국민이 우리의 모어인
한글을 공식어로 활용하여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수한 한글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같고 닮아야 할 모어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외국어, 특히 영어라고 하는 큰 괴물우상에 사로잡혀 우리의 한글은 아사 직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잠시 그 실태를 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살이 실태로 2012년 경상북도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생경한 영어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어순화운동의 위배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 말썸이 중국에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나라말이 미·영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어교과 관련 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교육에 관한 2012년도 경북도교육청 예산을 보겠습니다. 총 20여 억원인데 국어를 해당되는 것이 넉넉잡아 50%라 해도 국어 자체에 책정된 예산은 1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엔 영어교과 관련 2012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체가 317억원에 해당됩니다. 원어민영어교사 보조교사수가 660여 명이나 되고요. 또 거기에다 대고 23개 시·군 지자체에는 영어에 관련되는 예산이 작게는 수억에 많게는 수십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어 편중의 기현상을 보이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해율 고급 한국어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문해율은 비문맹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글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2009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이 98.8%, 40대 이하가 100% 해당되어서 문맹자가 40대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글의 연대별 기초문예를 보면 45년에 22.2%가, 2008년에는 98.3%로 급향상을 보인 것은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세계 국가에서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인의 고급문해력, 즉 고급한국어능력은 16, 19, 22 등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학력별 고급문해력을 살펴볼 때 중등 이하 학력자가 중하위권, 고졸학력자가 칠레 239점과 비슷한 최하위, 대졸 이상 학력자는 칠레보다 못한 꼴찌에 점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고급문해력, 즉 고급언어능력은 국민의 실질문해율이라 볼 때 우리나라의 성인과 고학력자들의 국어 능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언어정책 교육의 잘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반성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끝에 보면, 최만리가 한글창제의 반포와 사용을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한글은 너무 배우기 쉬워서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난 후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게을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중했다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언어정책, 영어만능주의 국가시책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영어상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각종 영어시험 응시료가 1년에 2,000억원에 달한, 그래서 경제 분야에서 영어종속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2007년 초·중·고의 교육부 예산이 지출에 비해 보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지출로 57%에 해당되는데 교육 분야 또한 영어 식민지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스쿨의 이사, 전 세계에 지사와 지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한 이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때 우리는 군함과 외교관을 해외로 보냈지만 지금은 영어교사를 보낸다”했습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을 말합니까? 군함과 외교관은 군사적·정치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고 영어교사를 보낸다 함은 언어적·문화적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실정으로 우리는 불란서의 요리의 하나인 냄비 속의 개구리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모르는 사이에 영어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 속에서 한글이 아사직전에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일변도 외국어 교육, 국어의 기초가 다지기 전 영어조기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영어원어민교사를 우리의 영어교사로 대체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언어정책과 사회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창숙 의원(비례) ◎

<<기슈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진실규명 및 강경 대응 촉구 관련>>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창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온갖 고초를 당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위로받지 못한 채 떠도는 희생자들의 영혼, 그 넋을 기리고, 일제 강제징용에 따른 기슈광산 한국인 사망자 추도터의 부당과세에 대한 우리 정부와 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한일강제병합 10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아직도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역사왜곡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오고 있어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과거사 중에서도 강제징용을 당하여 혹독한 강제노동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어간 수많은 노역자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да 할 것 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하는 '기슈광산'도 바로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 가운데 하나 입니다.

‘기슈광산’은 총알 제조용 구리 광산으로 1940년에서 1945년도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등에서 조선인 1,300여 명이 강제로 끌려와 그 가운데 35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강제노역자 1,300명 중 현재까지 주소확인된 인원만 727명이며, 이 가운데 본적이 우리 경상북도인 조선인이 63명이며, 신원확인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강제노역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기슈광산 강제노역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시민들이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오히려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까지 제대로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 본 의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단체는 ‘기슈광산’에서 가혹한 강제 노동 중 사망한 한국인을 정기적으로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비 건립을 계획하여, 2008년 6월 구마노시와 기슈광산을 운영한 이시하라 산업에 추모비 건립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마노시에서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한 재일동포 유지로부터 돈을 임차하여 2009년 7월에 조선인 추모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에현과 구마노시는 2011년 이 추모터 부지를 ‘공공성이 없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부지에 부동산 취득세 2만 6,300엔(한화로 약 35만원)과 고정자산세 1만 6,200엔(한화로 약 21만 7,0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당시 광산에 끌려왔다가 사망한 영국인 포로 노동자 16명에 대해서는 구마노시에서 희생자 묘지와 추모비를 만들어 주고 매년 위로행사까지 벌이는 극히 파렴치한 차별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해당 부지는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고 역사적 책임 소재를 밝히는 공공적 장소”라며 미에현과 구마노시를 상대로 부동산취득세와 고정자산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작년 12월 패소하였으며,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 '기슈광산의 진실을 밝히는 모임'은 강원도 의회와 우리 경북도의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일제 강제징용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의 진실규명과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해 정부는 물론,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강경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우리 선조들의 넋을 위로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일본 현지에서 강제동원의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일본의 양심적 학자와 시민들의 악전분투에 큰 힘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둘째, ‘기슈광산’에 강제징용된 우리 선조가 1,300여 명에 달합니다. 이중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의 선친들도 수백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스스로 깊이 자성하며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선조들이 살았던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제징용 현황 및 기초조사 작업만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현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소명이자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강권에 맞서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절입니다. 조국독립의 그날을 그리며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 피 흘린 애국선열들과 일제 강제 징용으로 말미암아 억울하여 눈감지 못하고 죽어간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의 원혼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후손인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바를 깊이 성찰하고 다시는 고통 받는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수향 의원(김천) ◎

<<대형마트 영업규제관련>>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천 출신 배수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7일 전주시의회가 전국 지방의 최초로 대형마트 규제조례를 제정한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 말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대형마트는 25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은 41개소로 모두 6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1년 말 현재 우리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수 269만 9,000명에 대비하여 보았을 때 인구수 약 4만 명당 대형마트 1곳으로 관련업계에서는 보통 인구 15만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1곳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경북은 대형마트와 SSM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포항은 인구수가 51만 7,000명에 대형마트는 9개로 인구 5만 7,000명당 대형마트 1개꼴이며 김천의 경우 인구수는 13만 6,000명인데 비하여 대형마트는

두 곳으로 인구 6만 8,000명당 1곳으로 나타나 경북에서 포항, 영주에 이어 세 번째로 대형마트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김천에 대형마트가 1곳 더 입점하게 된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됩니다.

실제 통계조사에서도 지역 내 소비가 대형마트 등에 편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경북의 대형소매점 경상지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100이라고 볼 때 2011년 12월 현재 164.9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6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상지수도 189.3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5위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어 그 만큼 지역 내 소비가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에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시 그대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기청 시장경영진흥원이 전국 16개 시·도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우리 경북의 경우 조사대상 138개 전통시장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곳은 죽도시장, 죽도농산물시장, 영천공설시장, 영해 5일시장 등 네 곳에 불과하여 전체 2.9%에 그쳤습니다. 또한 시장활성화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B등급은 열두 곳으로 전체 시장의 9%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 14.1% 보다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바로 이 자리에서 김관용 지사님께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2012년도 도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꼽았던 것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이었고, 이것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구멍가게 하나 차려도 자식 공부 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 누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영역확장으로 우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우리 이웃들이 생업을 접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고단한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규제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에 있다하여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서민경제의 원동력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론수렴 등을 통하여 대형업체들이 지역중소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 록



- 조례안 : 11건(원안가결 8, 수정가결 3)

■ 조 례 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낙동강살리기사업단”을 “일자리경제본부”로 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제11호 중 “모자보건 및 저출산고령화”를 “고령화”로,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를 삭제하고, 제19호를 제20호로 하며,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다문화사회에 관한 사무

제29조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 2.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3.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9.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제32조제1호 중 “관할구역 내의 소방”을 “소방행정의 기본운영”으로, 제2호 중 “소방력 조사 및 기준 책정”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로, 제3호 중 “소방차량 및 장비유지관리”를 “소방장비 및 공유재산의 유지 관리”로, 제4호 중 “경방계획”을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으로, 제5호 중 “화재진압 및 구조”를 “화재의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으로, 제6호 중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을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으로, 제7호 중 “특수장소의 법정 소방훈련”을 “특정소방대상물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으로, 제8호 중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을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로, 제9호 중 “소방홍보 및 불조심 계몽지도”를 “화재의 예방 및 홍보”로, 제10호 및 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 및 기능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 조(부지사) ③정무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2. (생략) 3. <u>낙동강살리기사업단</u>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4. ~ 10. (생략)	제 4 조(부지사) ③..... 1. ~ 2. (현행과 같음) 3. <u>일자리경제본부</u>..... 4. ~ 10. (현행과 같음)
제 5 조(실 · 국 · 단 · 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 일자리경제본부 · 투자유치본부 · 문화관광체육국 · 농수산국 · 환경해양산업국 · <u>보건복지여성국</u> · 건설도시방재국 · 낙동강살리기사업단(한시기구) · 도청이전추진본부(한시기구) · 행정지원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 5 조(실 · 국 · 단 · 본부의 설치)<u>보건복지국</u>.....
제 12 조(보건복지여성국) <u>보건복지여성국</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u>모자보건 및 저출산고령화</u> 대책 추진 12. (생략) 13. <u>여성복지에 관한 사무</u> 14. <u>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향상</u> 15. <u>가족정책에 관한 사무</u> 16. ~ 17. (생략) 18. <u>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무</u> 〈신 설〉 19. (생략)	제 12 조(보건복지국) <u>보건복지국장</u> 1. ~ 10. (현행과 같음) 11. <u>고령화</u>.....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6. ~ 17. (현행과 같음) 〈삭 제〉 <u>19. 다문화사회에 관한 사무</u> 20. (현행 제19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29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신설〉 〈신설〉 1. - 5.(생략) 〈신설〉 6. (생략)	제29조(소관사무) ……………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 8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9.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10.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2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할구역 내의 소방에 관한 사항 2. 소방력 조사 및 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방계획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및 구조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특수장소의 법정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9. 소방홍보 및 불조심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10. 구조·구난·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11.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제32조(소관사무) …………… ……………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2.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3. 소방장비 및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4.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 5. 화재의 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6.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 7. 특정소방대상물 및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훈련……………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9. 화재의 예방 및 홍보…………… 〈삭제〉 〈삭제〉 12.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별표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0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포항북부소방서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6-7	포항시 북구 일원, 영덕군 일원
포항남부소방서	포항시 남구 일월동 234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소방서	경주시 황오동 389-11	경주시 일원
김천소방서	김천시 지좌동 726-4	김천시 일원
안동소방서	안동시 법흥동 32-9	안동시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 일원
구미소방서	구미시 공단동 207	구미시 일원
영주소방서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25-1	영주시 일원, 봉화군 일원
영천소방서	영천시 조교동 566	영천시 일원
상주소방서	상주시 서성동 55-1	상주시 일원
문경소방서	문경시 흥덕동 534-1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소방서	경산시 조영동 314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의성소방서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700-3	의성군 일원, 군위군 일원
고령소방서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 170	고령군 일원
성주소방서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9	성주군 일원
칠곡소방서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산5-1	칠곡군 일원
울진소방서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	울진군 일원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4,792명”을 “4,9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07명”을 “1,915명”으로, 제2호 중
“2,747명”을 “2,934명”으로 하며, 제3호 중 “41명”을 “43명”
으로 한다.

별표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구분란 중
“기능직·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3호 기능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율	1% 이내	8% 이내	29% 이내	31% 이내	31% 이상

별표 3 중 합계란 “4,792”를 “4,989”로, 일반직 소계란 “1,421”을

“1,429”로, 일반직 4급 중 합계란 “74”를 “76”으로, 본청란 “54”를 “56”로, 일반직 5급 이하 합계란 “1,333”을 “1,339”로, 소방직 소계란 “2,747”을 “2,934”로, 소방직 소방정 중 합계란 “18”을 “19”로, 본청란 “2”를 “3”으로, 소방령 이하란 “2,729”를 “2,915”로, 교원 소계란 “41”을 “43”으로, 교원 교수 중 합계란 “29”를 “31”로 하고, 직속기관란 “29”를 “3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능 10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현원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원 정원의 총수는 <u>4,79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907명</u> 2.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에 두는 소방 공무원의 정원 : <u>2,747명</u>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u>41명</u> 4. (생략) [별표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table><tr><th>구 분</th><th>일 반 직</th><th>기능직·교용직</th><th>별정·정무직</th></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별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3. 기능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h>10급</th></tr><tr><td>비율</td><td>1% 이내</td><td>8% 이내</td><td>29% 이내</td><td>31% 이내</td><td><u>22%</u> 이내</td><td><u>9%</u> 이상</td></tr></table>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교용직	별정·정무직	⋮				⋮				⋮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1% 이내	8% 이내	29% 이내	31% 이내	<u>22%</u> 이내	<u>9%</u> 이상	제 2 조(정원의 총수)<u>4,989명</u>..... 1. : <u>1,915명</u> 2. : <u>2,934명</u> 3. : <u>43명</u> 4. (현행과 같음) [별표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 <table><tr><th>구 분</th><th>일 반 직</th><th>기 능 직</th><th>별정·정무직</th></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별표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3. 기능직공무원 <table><tr><th>구분</th><th>5급</th><th>6급</th><th>7급</th><th>8급</th><th>9급</th></tr><tr><td>비율</td><td>1% 이내</td><td>8% 이내</td><td>29% 이내</td><td>31% 이내</td><td><u>31%</u> 이상</td></tr></table>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정무직	⋮				⋮				⋮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8% 이내	29% 이내	31% 이내	<u>31%</u> 이상
구 분	일 반 직	기능직·교용직	별정·정무직																																																								
⋮																																																											
⋮																																																											
⋮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율	1% 이내	8% 이내	29% 이내	31% 이내	<u>22%</u> 이내	<u>9%</u> 이상																																																					
구 분	일 반 직	기 능 직	별정·정무직																																																								
⋮																																																											
⋮																																																											
⋮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8% 이내	29% 이내	31% 이내	<u>31%</u> 이상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지역정보화기본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 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8.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9. “정보화부서”란 경상북도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1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

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11.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 3 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 4 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역정보화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 5 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고려하고 시·군의 부문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도지사는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지역정보화위원회) ①지역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정보화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기타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 3 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도지사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도지사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도지사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화 교육) ①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8조(정보문화의 창달) ①도지사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 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격차의 해소) ①도지사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 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도지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 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보호) ①도지사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 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를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9인”을 “11인”으로 하고, “5인”을 “7인”으로 하고,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을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자 중”으로 하고, “도지사”를 “경상북도지사”로 한다.

제3조와 제4조를 각각 제6조와 제7조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시 위원회의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업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경상북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내 시·군의회의 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하여 같은

조를 제8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와 제7조를 각각 제9조와 제10조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하여 같은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u> 제 2 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u>9인</u>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u>5인</u>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도 의회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u>도지사</u>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생략) 〈신설〉	<u>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u> 제 2 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u>11인</u> <u>7인</u>.....<u>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자 중</u><u>경 상 북 도 지 사</u>..... ②(현행과 같음) 제 3 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u>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 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u> ②<u>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u>

현 행	개 정 안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제 4 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증식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의뢰 시 위원회의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u>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u> 1. 경상북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경상북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경상북도 내 시·군의회의원, 시·군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u>〈신설〉</u>	<u>제 5 조(심사기준)</u> 위원회는 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u>제 3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u> (생략)	<u>제 6 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u> (현행 제3조와 같음)
<u>제 4 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u> (생략)	<u>제 7 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u> (현행 제4조와 같음)
<u>제 5 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생략)</u> ②(생략) 1. ~ 3. (생략)	<u>제 8 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현행과 같음)</u> ②(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4. 법 제24조
제 6 조(위원회의 간사 등) (생략)	제 9 조(위원회의 간사 등) (현행 제6조와 같음)
제 7 조(수당 등) (생략)	제10조(수당 등) (현행 제7조와 같음)
〈신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 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는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로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규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호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 도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 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 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 3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

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도청 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 4 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 5 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 6 조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전단의 경감률에 추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 7 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8 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 9 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단, 사업개시일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취득일)부터 15년간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한의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연장하는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①「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은 제외하며, 사업허가를 받기 전 6월 이내에 취득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2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별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서는 1장의 고지서에 도세와 시군

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되, 도세의 세목이 병기된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도세를 우선 공제한다.

제14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 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 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5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 조례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3 조(일반적 경과조치) ①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도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다.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안용복 장군”을 “안용복”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안용복 장군”을 “안용복”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년 2월 10일

제 안 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13조(공무원 파견) 중 “필요시”라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9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3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때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3조 중 『필요시』를
『필요한 때에는』으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안용복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를 수호한 <u>안용복 장군의 정신을 계승발전</u> 시키고,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등 독도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u>안용복</u>,.	제 1 조(개정안과 같음)
제 4 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안용복 장군</u> 등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2. ~ 7. (생략)	제 4 조(사업) 1. <u>안용복</u> 2. ~ 7. (현행과 같음)	제 4 조(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 <u>신 설</u> 〉	<u>제13조(공무원 파견)</u> <u>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u>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u>제13조(공무원 파견)</u> <u>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u>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13조(생략)	제 14조(현행 제13조와 같음)	제 14조(개정안과 같음)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안용복 장군”을 “안용복”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하고, “국립환경
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재교부 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납부”를 “경상북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경상북도 여비조례”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시험완료일로 부터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정 전염병”을 “법정 감염병”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년 2월 9일

제 안 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4조제3항 중 “시험성적서 발급 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에 대하여 “재교부”는 “한 번 내준 증명서 따위의 서류를 다시 내줌”을 의미하므로, 이 용어에는 이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시험성적서 발급 후”라는 표현을 추가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제3항 중 『시험성적서 발급 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를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u>국립보건원</u>시험의뢰 규칙과 <u>국립환경연구원</u>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 하되,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이와 유사한 품목의 수수 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검사 등의 수수료는 <u>경상북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u> <u>라 한다)로</u>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연구용역사업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생략) ④제3항의 여비는 <u>경상북도</u> 여비 <u>조례</u>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징수 방법) ①…………… ……<u>질병관리본부</u>… <u>국립환경과학원</u>…… …………… …………… ……………. <u>다만, 시험성적서</u> <u>재교부</u> <u>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u> ②……<u>경상북도수입</u> <u>증지(이하 "수입증지"라</u> <u>한다) 또는 정보통신</u> <u>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u> <u>전자결제 등의 방법</u> <u>으로 납부</u>……………. ③(현행과 같음) ④……<u>경상북도 지방</u> <u>공무원 여비조례</u>….	제3조 (개정안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 4 조(시험성적서 교부) ①~②(생략) ③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 징수 후 발급한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시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 4 조(시험성적서 교부) ①~②(현행과 같음) ③<u>시험성적서 발급 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시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u>	제 4 조(시험성적서 교부) ①~②(현행과 같음) ③<u>시험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시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u>
제 5 조(수수료 감면) ①(생략) 1. (생략) 2.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8. (생략) ②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 인가된 <u>간이상수도</u>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먹는물 수질검사는 먹는물 일반검사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③~④ (생략)	제 5 조(수수료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법정 감염병</u>…… 3~8. (현행과 같음) ②…………… …<u>마을상수도</u>…………… …………… …………… ……………. ③~④(현행과 같음)	제 5 조(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8. (현행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③~④(현행과 같음)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의 명칭란 중 영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영덕야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하며, 영덕초등학교창포분교장병설유치원을 영덕야성초등학교창포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한다.

별표 2의 명칭란 중 영덕초등학교를 영덕야성초등학교로 하고, 영덕초등학교창포분교장을 영덕야성초등학교창포분교장으로 하며, 영덕초등학교매정분교장을 영덕야성초등학교매정분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u>영덕초등학교</u> <u>병설유치원</u>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6	<u>영덕야성초등학교</u> <u>병설유치원</u>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6
<u>영덕초등학교</u> <u>창포분교장</u> <u>병설유치원</u>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u>영덕야성초등학교</u> <u>창포분교장</u> <u>병설유치원</u>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현행		개정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u>영덕초등학교</u>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6	<u>영덕야성초등학교</u>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96
<u>영덕초등학교</u> <u>창포분교장</u>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u>영덕야성초등학교</u> <u>창포분교장</u>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u>영덕초등학교</u> <u>매정분교장</u>	영덕군 영덕읍 매정길 235	<u>영덕야성초등학교</u> <u>매정분교장</u>	영덕군 영덕읍 매정길 235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4,882명”을 “4,88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877명”을 “4,879명”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2 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4,882명</u>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 5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 <u>4,877명</u>	제 2 조(정원의 총수) <u>4,884명</u>....., 1. 2. : <u>4,879명</u>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1985.12.27 조례 제1557호]

개정 1991. 3.25 조례 제2004호 2001. 1.15

조례 제2680호 1992. 2.29 조례 제2100호 2004. 3.25

조례 제2809호 1998.12.31 조례 제2525호 2006.12.28

조례 제2952호 부칙 2000. 9.21 조례 제2653호

제 1 조(목적) 평생교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의 평생교육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소속하에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1. 3. 25, 2000. 9. 21〉

제 2 조(조직)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과학산업교육과장·기획예산과장·경상북도 새마을과장·사회복지과장·체육청소년과장·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91. 3. 25, 92. 2. 29, 2000. 9. 21, 2001. 1. 15, 2006. 12. 28〉

제 3 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직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개정 2000. 9. 21>

1. 평생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2. 평생교육실시를 위한 지원체제확립
3.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
4. 기타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7 조(수당과 여비) ①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4. 3. 25>

제 8 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청 평생교육업무담당사무관, 서기는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담당자가 된다.<개정 92. 2. 29, 2001. 1. 1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평생교육협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생교육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 9. 21〉

부 칙〈85. 12. 27〉

이 조례는 198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3. 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1〉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생략)

부 칙〈200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5〉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4호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동조제15호의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②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의 “사회체육보건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③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체육보건과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사회체육보건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한다.

④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의 소관별란 중 “사회체육보건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하고, 건명란 중 “일반사회교육시설”을 “일반평생교육시설”로 한다.

부 칙〈2004. 3. 25〉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생 략)

부 칙〈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52호, 2006. 12. 28〉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2월 17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
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을 포함”을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
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3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적정하게”를 “적절하게”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 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을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학원에 있어서는”을 “학원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기타 교습 및”을 “그 밖에 교습과”로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건위생상”을 “보건위생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강의실 :”를 “강의실:”로, “1.2인”을 “1.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열람실 :”를 “열람실:”로, “0.8인”을 “0.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험·실습실 :”를 “실험·실습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및 급수시설 :”를 “및 급수시설:”로,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6호 중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을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하여져 있지”를 “정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현재 운영 중인 학원 중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있는”을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을 “하고,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중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거”를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의5를 삭제한다.

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를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조제2항 및 제12

조와 이 조례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제2의 제1항제5호 및 영 제12조에 따라”로, “채용한”을 “채용하였을”로, “첨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를 “붙여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통보하여야”를 “등록하거나 통보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임한”을 “해임하였을”로, “교육장에게”를 “교육장에게 등록하거나”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일구내”를 “같은 구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로, “초·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을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익일”을 “다음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감”을 “관할 교육장”으로 한다.

제12조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정기연수(년1회) :”를 “정기연수(연1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수 :”를 “연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시연수 :”를 “수시연수:”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 2 조(학원의 시설·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시설·설비 기준에 따라 설립·등록
된 학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12년 2월 14일

제 안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을 부여하며, 불법적인 개인고액과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달리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에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3:00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로 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고등학생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3:00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05:00부터 23:00
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u>동법시행령</u>(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목적)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u>및 같은 법률 시행령</u> <u>시행에</u> 	제 1 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 2 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u>법 제4조 제3항의</u>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 2 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제 2 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
1. (생략)	1. <u>(현행과 같음)</u>	1. <u>(개정안과 같음)</u>
2. (생략)	2. <u>(현행과 같음)</u>	2. <u>(개정안과 같음)</u>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②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u>경우에는</u>	②(개정안과 같음)
③ 학원 설립·운영자 등은 <u>교육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u>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u>교육기본법</u>」 <u>제12조에 따라</u> 학생을 <u>포함</u>.....	③(개정안과 같음)
④ <u>제3항의 규정에 의거</u>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u>기타</u>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u>적정하게</u>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u>제3항에 따라</u>.....<u>그 밖의</u><u>적절하게</u>	④(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u>학원에 있어서는</u> 보건실, 휴게실, 체육시설 (체육장) 4. (생략) 5. (생략)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체육시설, 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 4 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실 : 강의실	<u>학원의 경우에는는</u>…… ……………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교습과……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 …………그 밖에…… 7. 보건위생을 위하여… …………… 제 4 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①법 제8조에 따른…… …………… …………… 1. 강의실: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7. (개정안과 같음) 제 4 조의2(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u>1.2인</u>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u>열람실</u> : 열람실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u>0.8인</u>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3. <u>실험·실습실</u>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4. <u>화장실 및 급수시설</u>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u>1.2명</u>..... 2. <u>열람실</u>:..... <u>0.8명</u>..... 3. <u>실험·실습실</u>:..... 4. 및 <u>급수시설</u>: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5. (생략) 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갖추는 것. ② (생략)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별표 2로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5. (현행과 같음) 6.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관리법」.....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법 제8조에 따른.....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의3(교습과정별 시설기준) (개정안과 같음)

- 128 -

현행	개정안	수정안
<u>규정에 의하여</u>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습을 할 수 없다. ②영 제5조의2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의 위치는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이나 강의실이 속해 있는 건물과 동일 경계 안에 위치할 것. 2. 숙박시설의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소음·진동	 ②영 제5조의2제2항에 <u>따른</u>..... 1.<u>같은</u>..... 2.<u>하고, 「소음·진동</u>	 ②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u>규제법</u>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출 것. 3. (생략) 4. (생략)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69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영양사를 배치할 것.	<u>관리법</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수질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6.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할 것. 다만, 남녀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을 배치한다. <u>제 4 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교육감은 제4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7.1명1명 〈삭 제〉	7. (개정안과 같음) 〈삭 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③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교육감 소속 하에 두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 6 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강의실과 실습실의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를 각각 합한 인원수로 한다. 단, 실습실 일시수용능력 인원수는 1.5 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제 4 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원격교습학원은 그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 6 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 4 조의6(원격교습학원의 등록기준) (개정안과 같음) 제 6 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하되, 건설기계운전 교습 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무용교습과정 중 현대무용 실습실은 2.4제곱미터당 1명 이하, 음악교습과정 중 피아노 실습실은 3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한다. 제 7 조(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통보) ①학원의 설립·운영자가 영 제 7조제2항 및 제12조와 이 조례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담당 인력(이하 “강사 등”이라 한다)을 채용한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학원의 설립·운영자가 강사 등을 해임한	 제 7 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①..... 영 제5조제2의제1항제 5호 및 영 제12조에 따라..... 채용하였을 붙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 하거나 통보 하여야... ②..... 해임하였을	제 7 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u>교육장에게</u> 통보 하여야 한다. 제 8 조(수강료 등의 통보) ①영 제5조제2항, 영 제7조제2항 및 영 제 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학원(교습소 포함)의</u> <u>수강료 등의 금액과</u> <u>설립자 변경은 그 시행일</u> <u>로부터 10일전, 시설</u> <u>변경은 4일전, 위치변경은</u> <u>7일전에 관할 교육장</u> <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②통보한 수강료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는 인상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고 학교교과 <u>교습학원 및 교습소의</u> <u>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u>	<u>교육장에게</u> <u>등록하거나</u>.....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인정되는 때에는 수강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u> 제 9 조(설립제한) ①(생략) ②타인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개원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학원(교습소 포함)의 시설은 동일구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실습장은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둘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제 9 조(설립제한) ①(현행과 같음) 〈삭제〉 ③.....같은 구내.....,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①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제 9 조(설립제한) (개정안과 같음) 〈삭제〉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현행	개정안	수정안
초·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05:00부터 22:00..... 다만, 고등학생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23: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초등학생 05:00부터 21:00까지, 중학생 05:00부터 23:00까지, 고등학생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학교교과교습학원 중에서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익일 04:00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다만,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귀가 시는 예외로 한다.	②.....다음날.....,,	②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광고 및 안내서) ① (생략) ②교육감은 제1항의 광고 또는 안내서를 심사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11조(광고 및 안내서) ① (현행과 같음) ②관할 교육장.....	제11조(광고 및 안내서)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배포를 중지시키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처분기준) <u>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u>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제13조(과태료) 법 제23조 및 영 제21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학원(교습소 포함)을 1월 이상 무단휴원	 제12조(행정처분기준) <u>법 제17조에 따라</u>..... 1. <u>(현행과 같음)</u> 2. <u>(현행과 같음)</u> 3. <u>(현행과 같음)</u> 4. <u>(현행과 같음)</u> 5. <u>(현행과 같음)</u> 6. <u>(현행과 같음)</u> <u>〈삭제〉</u>	제12조(행정처분기준)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개정안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하거나 폐원하고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u> <u>-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u> <u>2. 강사 등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2호 해당자)</u> <u>- 30만원</u> <u>3.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한 자(법 제23조제1항제3호 해당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u> <u>4. 개인과외교습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법 제23조제1항제4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u>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5. 수강료 등을 게시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게시한 자(법 제23조제1항제5호 해당자) - 50만원 6. 시설·설비, 수강료 등 교습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 (법 제23조제1항제 6호 해당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7.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23조제1항제7호 해당자) - 100만원 8. 수강료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법 제23 조제1항제8호 해당 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4조(법인 위탁업무의 지원) ①교육감은 <u>영 제20조제3항의 규정</u> 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이 영 제20조제3항의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법인 위탁업무의 지원) ①..... <u>영 제20조제3항에 따라</u>	제14조(법인 위탁업무의 지원)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u>현행과 같음</u>)	③ (개정안과 같음)
1. <u>정기연수(연1회)</u> : 기존의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1. <u>정기연수(연1회)</u> :	1. (개정안과 같음)
2. 신규설립·운영자 <u>연수</u> : 학원 또는 교습소의 신규설립·운영자	2. <u>연수</u> :	2. (개정안과 같음)
3. <u>수시연수</u> :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 <u>기타</u>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u>수시연수</u> : <u>그 밖의</u>	3. (개정안과 같음)